

損害保險料率의 自律化와 그 對應方案

趙 海 均

(漢陽大教授・保險學會長)

目 次

- I. 序 論
- II. 規制手段과 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據
 1. 規制의 意義, 重要規制手段 및 規制手段의 選擇・使用의 困難性
 2. 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據
- III.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原理 實施의 限界性과 有效競爭原理의 必要性
- IV. 우리나라 損害保險產業에 있어서 競業規制措置의 內容과 競業規制緩和措置의 必要性
 1. 競業規制措置의 不可避性과 競業規制措置의 一般的 內容
 2. 損害保險에 있어서 現行保險料率規制 制度
 3. 競業規制措置의 矛盾點과 競業規制緩和措置의 必要性
- V. 損害保險市場에 있어서 價格形成과 料率自由化의 限界性
 1. 保險市場에 있어서 價格形成理論
 2. 價格形成理論의 非現實性과 矛盾點 및 料率自由化의 限界性
- VI. 損害保險市場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自由化方案
 1. 基本的 政策의 方向
 2. 家計性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自由化

의 困難性과 그 對應方案

3. 企業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自由化와 그 對應方案

VI. 結 論

I. 序 論

保險市場의 開放을 계기로하여 우리나라 保險產業分野에서도 創意力과 競爭能力을 提高하고 保險會社의 健全한 經營基盤을 確立하기 위하여서도 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의 原理를 導入・實施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保險市場은 他市場의 경우와는 달리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保險生産의 容易性과 販賣의 困難性 때문에 保險市場에서는 完全自由競爭의 原理를 導入・實施하는데 制約과 限界性이 있으므로 “有效競爭의 原理”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에서 保險料率의 自由化를 어떻게 하는 것이 有效競爭의 效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政策方向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保險市場에서 (競業)規制手段이 무엇이며 (競業)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據가 무

엇인가를 살펴보고(II章), 保險市場에서 왜 有效競爭이 필요한가를 說明하고(III章), 우리나라 損害保險產業에 있어서 (競業)規制措置의 內容과 規制緩和措置가 왜 必要한가를 살펴 본 다음에(IV章), 損害保險市場에서 理論家들이 주장하는 것과 는 달리 保險料率의 自由화가 왜 制約과 限界性이 있는가를 價格形成理論을 批判함으로써 說明하고 (V章), 마지막으로 損害保險市場에서 保險料率의 自由化方案에 대한 政策의 方向을 제시하고(VI章), 結論(VII章)을 맺을까 한다.

II. 規制手段과 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據

1. 規制의 意義, 重要規制手段 및 規制手段의 選擇・使用의 困難性

規制(regulation)란 國家의 法令, 行政指針 또는 保險者들의 相互協定등에 의하여 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을 制限하고 抑制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反하여 規制緩和(deregulation)란 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을 制限하고 抑制하는 上기한 措置를 緩和하는 것을 의미한다.

一般製造業이나 서어비스業 分野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國家가 事業運營에 대하여 最大限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주지만, 保險事業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는 勿論 대부분의 先進國家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國家가 엄격하게 規制하고 干涉하고 있다.

특히 國家가 保險事業에 대하여 여러가지 側面에서 競爭行爲를 規制하고 있는바, 各國家에서 規

制對象, 規制手段, 規制強度面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各國家에서 國家가 保險事業에 競爭行爲를 規制하는 重要한 手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 ① 事業許可에 대한 規制
- ② 擔保力 및 支拂能力에 대한 規制
- ③ 保險事業 兼營에 대한 規制
- ④ 保險商品(條件)에 대한 規制
- ⑤ 保險料에 대한 規制
- ⑥ 資産運用에 대한 規制
- ⑦ 募集組織 및 募集秩序에 대한 規制

保險商品과 保險料率은 重要한 規制手段이지만 유일한 規制手段은 아니다. 上記한 諸般 規制手段은 競業政策의 目的을 달성하는데 相互不可分の關係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效率的으로 競業政策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上記한 諸般規制手段을 어떠한 方向으로 使用할 것인가에 대하여 綜合的으로 檢討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어떠한 規制手段을 어떠한 方式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하여서는 正論이 存在하지 않고 存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問題는 各國家의 時代的狀況과 條件, 國民들의 意識水準, 經濟行態, 遵法精神, 市場洞察力 등의 諸要因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것을 競業政策의 基本理念과 目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決定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競業政策의 基本理念과 目的을 規範的으로 設定하느냐에 대한 問題에 대하여서는 理論家와 實務者間에도 意見이 일치하지 않으며 各時代와 各社會에 있어서는 相異하다.¹⁾

1) Hoppmann, E.: Workable Competition als Wettbewerbspolitisches Konzept, In: Theoretische und institutionelle Grundlagen der Wirtschaftspolitik, Festochrift für Theodor Wessels, Berlin 1967, S. 145 ff.

그러나 우리나라와 保險產業의 現實을 감안하여 본다면 바람직한 競業政策의 理念과 目的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低廉한 保險料와 良質의 서어비스로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權益保護

② 保險事業의 健全한 育成과 發展

③ 保險事業의 國際競爭力의 強化

추구하는 競業政策의 目的이 多元的인 目的이며, 이들 目的 相互間에는 相互補完的 關係와 相互 排他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實務적으로 競業政策의 手段을 決定, 使用하는데 많은 困難을 주게된다.

保險事業은 信用事業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權益이 保護되지 못하면 長期的으로는 保險事業의 公心力이 低下되어 保險事業에 막대한 被害를 주게 되어 保險事業이 健全하게 育成, 發展할 수 없음은 勿論 保險事業의 國際競爭力도 強化될 수 없다.

따라서 長期的 眼目에서 보면 競業政策의 第1次的 目的을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權益保護에 두고 規制 또는 規制緩和手段을 選擇·使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據

이미 오래전부터 國家의 規制가 企業의 自律性을 制約하고 創意力이나 革新的 努力을 弱화시켜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要素로 作用하고 있음을 認識하여 諸産業分野에서 規制緩和에 대한 問題를 論議하게 되었다.

保險産業分野에서는 얼마전부터 經濟의 自由化, 開放化, 國際化 時代로 變化되어 가는 世界的인 環境

變化 趨勢에 對處하기 위하여 保險市場에서 지금까지 自由競爭 行爲를 制限하여온 各種의 規制를 緩和하고 어떻게 保險市場에서 競爭原理를 導入하여야 하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學者, 實務者 및 行政當局者間에 많은 論議와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商品과 料率에 대한 規制問題를 가지고 規制가 불가피하다는 論據와 規制緩和가 필요하다는 論據가 對立되고 있다.

競業規制緩和에 대한 對立되는 論據는 주로 ① 生産容量에 대한 論據, ② 安全性에 대한 論據, ③ 料率算定에 대한 論據 그리고 ④ 市場洞察力과 情報에 관한 論據를 가지고 贊·反兩論으로 對立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²⁾

個個의 論據別로 規制의 贊成論者의 主張과 規制의 反對論者의 主張을 比較하고, 保險市場에서 바람직한 競業政策의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生産容量에 대한 論據

保險保護라는 保險給付의 生産은 一般商品의 生産에 비하여 기계, 설비, 원료 등의 投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生産이 비교적 용이하며, 生産容量에 制約을 받지 않는다.

保險生産이 容易한 반면에 保險商品의 販賣가 困難하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는 치열한 販賣競爭이 誘發될 수 있는 可能性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保險에서는 生産原價(補償額)는 事後에 나타나는 未確定額이기 때문에 販賣競爭에서 이기기 위하여 保險料를 引下하거나 Rebate를 支給함으로써, 破産의인 競爭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破産的 競爭은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權益保護를 위하여서는 물론 保

2) Eisen, Roland : Regulierung und Deregulierung in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In : Zfg VW, 78. Band, 1989. S. 157~159.

險産業의 健全한 發展에도 障害을 주기 때문에 國家가 保險市場에서 保險商品條件과 保險料에 대한 規制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規制緩和를 贊成하는 者들은 上記한 主張에 다음과 같은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³⁾

保險生産에 있어서도 生産容量의 制約은 어느 정도 받게된다. 付保件數에 대한 容量面에서는 많은 人力, 建物, 事務用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制約을 받는다. 付保金額에 대한 容量面에서도 事業의 規模가 커질수록 擔保資金으로서 資本金과 準備金을 더 많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制約을 받는다.

또한 保險會社가 販賣競争에서 이기기 위하여 非合理的으로 保險料을 낮게 策定할것이란 것을 가정하여 保險會社가 破産된다고 主張한 것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規制緩和를 하여도 保險市場에서 破産의 인 競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保險商品 및 保險料 面에서 自律化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2) 安全性에 대한 論據

保險産業은 信用事業의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事業運營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安全性이 필요하다.

保險會社의 破産은 被保險者의 權益을 侵害하고 保險事業에 대한 信賴性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全體保險 産業에는 물론 全體國民經濟적으로도 크나큰 惡影響을 주게 된다.

따라서 保險과 銀行과 같이 安全과 信賴가 중요

한 産業分野에서는 完全自由競争에 의한 破産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競業에 대한 規制가 필요하다.

規制緩和를 주장하는 者들은 保險事業이 信用事業의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安全性和 信賴性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認定한다.

그러나 保險會社의 安全性은 충분한 準備金 積立의 義務化, 財務狀況에 대한 繼續的 監督이나 保險保證基金의 設置 등의 方法을 통하여 對處할 수 있다. 따라서 保險市場에서 規制를 緩和하고 自由競争을 促進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3) 料率算定에 대한 論據

保險産業에서는 實際補償額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豫想損害額을 기초로 하여 保險料를 算定한다. 따라서 個個 保險會社別로 危險을 評價하여 保險料를 算定하게 한다면 統計資料의 不足으로 保險料를 正確하게 算定할 수 있는 危險性을 다분히 가지게 된다.⁵⁾ 그릇된 保險料 算定으로 인한 保險會社의 破産은 保險會社는 물론 다수의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들도 被害를 받게 된다.

保險契約者는 兩面的 利害를 가지고 있어, 一面에서는 保險料의 債務者로서 낮은 保險料를 支拂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他面에서는 保險給付의 債權者로서 保險契約이 確實하게 이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保險契約者의 利害는 서로 對峙되고 相峙되는 兩面的 利害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債務者 立場의 利害보다도 債權者 立場의 利害에

3) Finsinger, Förg : Zur Liberalisierung des Preiswettbewerbs in der Versicherungs, Arbeitsberichte Nr. 27 des FB Wirtschafts-und Sozialwissenschaften, Hochschule Lüneburg, Oktober, 1987, S.4

4) 실제로 많은 保險業者들은 Cash flow underwriting 戰略을 추구하기 때문에 保險料를 낮게 策定하여 販賣하는 경향이 모든 國家에서 나타나고 있다.

5) Farny, Dieter : Über Regulierung und Deregulierung von Versicherungsmärkten, In : ZfB. 57, Jahrgang 1987, S. 1009.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支給되는 保險金은 항상 이들이 支拂하여야 될 保險料 보다도 매우 높은金額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理由때문에 保險料 등의 規制緩和에 反對한다.

이에 대하여 規制緩和을 贊成하는 사람들은 競争規制로 인하여 保險料의 引上, 서어비스의 不良化, 保險者의 利益増大 등의 現象이 나타나게 되어, 個個保險加入者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全體적으로는 많은 被害를 주기 때문에 價格規制緩和 등의 措置를 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⁶⁾

또한 保險契約者들의 債務者 立場의 利害와 債權者 立場의 利害는 相互對替的인 關係에 있지 않고 相互補完的인 關係가 있다.

만약에 保險契約者들이 保險會社의 財務狀態나 健全性 등에 대한 情報을 가지고 있으면 保險契約者들은 그가 支拂할 保險料額과 保險商品의 質(保險會社의 擔保力과 健全性)을 비교하여 購買를 決定할 것이다.

英國의 保險監督體系는 이러한 事實을 認定하여 競争을 制限하지 않는 대신에 保險關係者들이 保險會社의 擔保力과 健全性 등에 대한 情報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方向으로 努力하고 있다⁷⁾(freedom with publicity).

또한 個個會社別로 料率算定의 困難性은 協會나 特定機關에서 算定한 것을 토대로 하여 保險會社

가 個別的으로 決定하도록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規制를 緩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市場洞察力과 情報側面에서의 論據

保險商品이 無形의 商品, 抽象的 商品, 觀念的 商品의 性格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保險約款의 內容이나 條件이 複雜하여 一般인들이 이를 理解하기 困難하기 때문에 保險需要者들은 市場洞察力을 缺如하고 있다. 특히 家計保險需要者들의 경우에는 市場洞察力이 매우 缺如되어 있다.

家計性 保險分野에서 商品競争, 料率競争을 自由로 하면 各保險會社가 제각기 상이한 商品을 상이한 價格으로 販賣하게 된다.

保險市場에서 이러한 自由競争이 順機能的인 影響을 줄 수 있기 위하여서는 保險加入者들이 상이한 保險者가 販賣하는 商品과 保險料에 대한 情報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反應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保險需要者, 특히 家計性 保險需要者들은 일반적으로 市場洞察力을 크게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保險商品의 內容, 條件, 質, 價格에 대한 比較, 判斷을 困難하게 한다. 이러한 困難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情報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따라서 保險需要者들은 保險商品의 內容이나 質, 價格을 比較, 判斷하여 購買하기 보다는 人的 局面에서 행하거나 保險會社의 名聲(goodwill-rep-

6) 保險料를 自由化하지 않고 規制를 함으로써 保險者의 利益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保險料를 規制하는 國家에서는 業者 스스로가 一定水準以上の 利益을 契約者에게 환원하여 주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行政當局이 保險者의 利益을 적정하게 規制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이러한 公示主義的 監督方式을 통하여 一般大衆들과 市場洞察力의 欠如를 補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存在하게 된다. 특히나 家計性 保險分野에 있어서는 保險需要者들이 스스로 그들의 權益을 위하여 市場洞察力을 増大·促進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公示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utation)에 의하여 購買하게 된다.⁸⁾ 이러한 狀況下에서 保險會社는 商品의 條件과 內容 그리고 價格面에서 優越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努力하기 보다는 保險會社의 利益만을 위하여 努力을 경주하게 되기 때문에 自由化에 대한 實效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自由化를 惡用하여 保險契約者들에게 매우 불리한 商品(詐欺性 商品)을 만들어 販賣를 하려고 할 것이다.

上記한 理由때문에 商品 및 料率自律化를 家計性 保險分野에서 反對한다.⁹⁾

이에 대하여 規制緩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商品競爭의 制限은 消費者들의 選擇可能性을 너무나 制約하고 保險會社의 創意力이나 革新的 努力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多様な 商品을 開發할 수 있게 하면 付保形態, 擔保條件, 料率體係 面에서 많은 改善을 가져오게 한다.

비록 家計性 保險加入者들이 市場洞察力을 缺如하고 있어, 自記에게 유리한 商品의 選擇이 困難하지만, 이러한 問題는 이들 保險仲介人이나 保險專門雜誌나 消費者保護雜誌 등에서 商品・價格 등을 比較하여 주는 方法을 통하여 解決될 수 있기 때문에 自由競爭이 順機能的인 役割을 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또한 料率競爭의 制限은 契約者 配當競爭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는데, 契約者 配當競爭은 價格比較를 困難하게 한다. 따라서 保險會社는 內實經營을 통하여 契約者 配當을 많게 하려는 努力을 경주하기 보다는 募集組織과 販賣活動의 強化를 통

한 實績爲主의 經營戰略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保險產業이 健全하게 발달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保險市場에서 商品競爭, 料率競爭을 強化함으로써 內實爲主의 經營과 競爭의 合理化 努力을 自救의으로 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英國, 美國, 불란서 등의 國家에서는 많은 家計性 保險分野에서도 商品 및 料率의 自由化를 實施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broker에 의한 販賣가 主를 이루고 있다.

上記한 理由때문에 商品 및 料率의 規制를 緩和하고 自律化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規制緩和에 대한 贊・反論者들의 主張을 살펴보았다.

規制緩和를 反對하는 者들에 의하면 保險市場의 特性, 保險商品의 特性, 保險生産 및 保險要件 등의 特性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完全 自由競爭의 實施는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가져와 制約과 限界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國家의 規制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 의하면 國家가 不完全市場 보다도 더 잘 規制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規制緩和를 主張하는 者들은 自由競爭이 결코 市場失敗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競爭體제가 靜인 것이 아니고 매우 適應能力이 있기 때문이다.

즉, 競爭은 刺戟機能, 發見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競爭스스로가 調整者의 役割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주지 않고 市場失敗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保險產業의 競爭能力을 提高시키고

8) Zohnhöfer und Eggerstedt, Deregulierung in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Die Liberalisierung des Bedingungs wettbewerbs, S. 121.

9) Farny, Dieter : Über Regulierung und Dergulierung von Versicherungsmäkten, In : ZfB, 57. Jahrgang, 1987, S. 1011.

10) Gutachten der Monopolkommission : Wettbewerb and Regulierung in der Versicherangswirtschaft, Nomos-Verlag, S. 256.

安定基盤을 確立하는데 크나큰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規制市場에서 競爭行爲를 規制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影響은 實제의 狀況이기 때문에 客觀적으로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規制緩和論者들의 主張과 같이 規制를 緩和하여 나타나게 되는 상기한 諸般肯定的인 影響은 “規制를 緩和하고 自由競爭을 促進하면 좋은 結果를 줄 것”이라는 단순한 假定에 불과하다.

비록 規制緩和論者들이 規制緩和를 實施하고 있는 美·英·佛 등의 國家의 例를 比較하고 있지만, 이들 國家의 保險市場에서 實제의 規制狀況을 단순히 法令案만을 보고 단순히 比較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들 國家에 있어서는 法律上的 規制와 行政上的 規制는 매우 緩和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國家가 保險業界에 自律規制를 폭넓게 許容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國家에서는 法律上·行政上的 規制緩和를 現實으로는 業者들의 自律規制로 補完하고 代替하고 있다.¹¹⁾

둘째로, 國民들의 意識水準, 思考方式, 經濟行態, 遵法精神, 市場洞察力 등의 與件과 狀況이 相異한 國家에서의 規制緩和의 影響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保障할 수 없다.

勿論, 規制反對論者와 贊成論者들의 主張은 서로 일치되지 않지만 “競爭으로 인하여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의 問題가 없는 限 保險市場에서 競爭

은 可能한 限 促進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兩側의 見解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III.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原理 實施의 限界性과 有效競爭原理의 必要性¹²⁾

一般的으로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企業間の 自由競爭의 存在는 經濟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原動力의 役割을 한다. 왜냐하면 市場에서 自由競爭과 價格메카니즘을 통하여 優秀業者(適格者)만이 生存하고 不良業者(不適格者)는 脫退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이 均衡과 調和를 이루어 市場이 安定된다. 이러한 機能을 自由競爭의 “選別 原理(Ausleseprinzip)” 그리고 自由競爭의 “調整原理(Steuerangsprinzip)”라 稱한다.

뿐만아니라 企業間の 競爭이 存在함으로써 그들은 제각기 他競爭業體보다도 값싸고 良質의 商品을 生産하기 위하여 生産施設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技術의 革新을 기하고 經營의 合理化를 위한 諸般努力을 경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機能을 自由競爭의 “生産性 向上的 原理”라 稱한다.

競爭關係에서 패배한 限界企業은 그들이 다른 企業보다도 더 能率적이고 效率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事業分野를 찾아서 事業을 經營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國民經濟적으로 制限된 生産資源을 最適으로 配分하도록 한다.

11) Farny, Dieter : (De)Regulierung von Versicherungsmärkten : Wettbewerb und Kundenwünsche im Versicherungsgeschaft, In : Versicherungswirtschaft, 44. Jg. 1989, S. 1476.

12)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原理의 導入·實施의 限界性과 困難性에 대하여서는 다음 論文을 참고하기 바람
趙海均: 保險產業에 대한 競爭政策의 方向에 관한 研究, 保險學會誌 제33輯, 319面~336面.

이러한 機能을 自由競爭의 “資源의 最適配分原理”라 稱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自由競爭의 “選別原理”, “調整原理”, “生産性向上의 原理” 그리고 “資源의 最適配分原理”는 自由競爭의 根本의 原理라 할 수 있다.

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을 통하여 상기한 네가지의 原理가 나타날 수 있으면, 全體國民 經濟的 立場에서 보면 그러한 自由競爭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肯定的인 影響을 주게 된다.¹³⁾

- ① 國民經濟面에서 볼 때 制限된 生産要素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活用하도록 하며 生産施設을 最大限으로 사용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國民經濟的으로 制限된 生産要素를 各 産業分野에 最適으로 配分하도록 함으로써 經濟發展과 成長에 寄與한다.
- ② 競爭의 刺戟으로 技術의 革新을 기하도록 하며 合理的 經營管理를 기하도록 하여 生産性을 提高시킨다.
- ③ 消費者들이 원하고 바라는 商品을 生産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商品의 價格을 引下하고 商品의 質을 向上시키며 서비스를 向上시킨다.

上記한 自由競爭의 利點은 完全自由競爭을 前提로 하였을 경우에 주게되는 肯定的인 影響이라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市場에서 上記한 完全自由競爭의 效果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¹⁴⁾

- ① 物的, 人的, 場所의 그리고 時間的 側面에서

優越性이 存在하여서는 아니되고 同質性이 存在하여야 한다.

- ② 供給者和 需要者 모두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市場關係者가 合理性의 原則과 極大化의 原則에 따라서 行動하여야 한다.
- ④ 市場의 參與와 脫退가 自由로워야 한다.
- ⑤ 供給者和 需要者가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制約하고 妨害하는 어떠한 干涉이나 規制가 存在하지 않아야 한다.
- ⑥ 供給者나 需要者는 市場條件 및 與件變化에 따른 無限한 適應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⑦ 市場에서 供給者和 需要者가 각기 多數이어서 獨斷적으로 市場에서 價格形成에 影響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上記한 7가지 條件 가운데서 1個 以上の 條件을 缺如하고 있는 경우를 經濟理論上으로 不完全市場 또는 不完全競爭市場이라 稱한다.

물론 完全市場(Vollkommener Markt)은 理想的인 概念이며 실제로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不完全市場만이 存在하고 있다.

어느 特定한 市場이 完全市場의 條件을 얼마나 具備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市場에서 自由競爭의 原理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自由競爭이 주는 上記한 諸般利點을 얻을 수 있다.

다른 市場과는 달리 保險市場은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保險生産의 特殊性和 保險商品 및 保險需要의 特殊性 때

13) 趙海均 : 保險經營論, 博英社 1976, 103面.

14) Farny, Dieter : Die Versicherungsmärkte, Eine Studie über die Versicherungsmarkttheorie Berlin 1961, S. 26-27.

15)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論文을 참고바람

趙海均 : 保險市場의 特性에 관한 研究 - Farny 教授의 “保險市場論”을 中心으로, 保險學會誌 第31輯, 70~76面.

문에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을 실시할 경우에는 上記한 自由競爭의 4가지 基本的 原理인 “調整의 原理”, “選別의 原理”, “生産性 向上의 原理”, 그리고 “資源의 最適配分の 原理”가 아무런 問題가 없이 나타나는데 制約과 限界를 가지게 된다.

먼저 保險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이 價格메카니즘과 “選別의 原理”에 의하여 均衡되어 市場의 均衡을 이룬다는 “調整의 原理”가 附合되지 않는 理由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⁶⁾

- ① 一般市場에서는 價格變動에 의하여 供給량이 조정되지만 保險市場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保險市場에서 自律的인 供給의 價格彈性은 存在하지 않으며 供給량은 주로 需要의 價格彈性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 ② 일반시장에서는 供給량이 需要量 보다 많아지게 되면 非效率的인 供給자가 倒産함으로써 總需要를 초과하는 總供給은 倒産한 供給자가 供給한 收量만큼 적어지게 되므로 需要와 供給이 均衡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保險市場에서는 이러한 假定이 成立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生産과는 달리 保險保護라는 保險給付의 生産은 별로 生産容량의 制約이 없이 容易하게 擴大 生産可能하기 때문에 生存한 保險會社들이 별 큰 資本의 投資가 없이도 倒産한 保險會社가 지금까지 供給하던 量을 손쉽게 供給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保險市場에서 保險

자가 倒産한다고 하더라도 需要와 供給間의 非均衡의 關係(需要人供給의 關係)는 또다시 이루어져서 保險市場이 不均衡으로 되기 때문이다.¹⁷⁾

둘째로 保險市場에서 適格한 保險者만이 生存하고 不適格한 保險者는 脫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選別의 原理”가 아무런 問題없이 實現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一般企業에서는 치열한 競爭으로 不良한 企業이 倒産하게 되면 그 倒産한 企業主와 소수의 債權者만이 被害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保險市場에서 한 保險者가 치열한 競爭으로 인하여 倒産한다면 이로 인하여 保險者 자신의 倒産에 그치지 않고 多數의 被保險者의 權益에까지 侵害를 주게 됨은 물론 保險事業에 대한 國民들의 信賴性에도 심각한 惡影響을 주어 全體經濟社會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¹⁸⁾

따라서 多數의 被保險者의 權益保護와 保險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서도 自由競爭의 “選別의 原理”를 保險市場에 전적으로 適用할 수 없다.

물론 “保險保證基金制度”의 新設을 통하여 不良한 保險者의 破産으로 인하여 被保險者가 입게되는 被害를 어느정도 保障할 수 있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의 選別의 原理가 별 問題없이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保險保證基金制度가 保險市場에서 業者相互間의 競爭을 促進시키기 위한 可能的 手段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制度를 통한 自由競

16) 趙海均: 保險産業에 있어서 競業政策의 方向에 관한 研究, 상게서, 332/333.

17) Farny, Dieter: Wirtschaftswissenschaftliches Gutachter über Prämienkartelle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Sonderbeilage der Versicherungswirtschaft, Heft 4, 1970. Feb. S. 18.

18) Grossfeld, Bernhard: Prämienkartelle i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Wettbewerb als Aufgabe nach zehnen Jahren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Verlag Gehlen, Berlin/Zürich 1968. S. 132f.

爭의 促進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주게 된다.¹⁹⁾

- ① 不實企業의 經營責任을 健全한 企業의 經營責任으로 전가시키는 모순을 주게 된다.
- ② 不實企業의 責任回避를 조장하고 投機的인 保險事業 運營의 風土를 조장하게 한다.
- ③ 保險加入者의 保險料 負擔을 加重시키고 優良한 保險加入者의 保險契約者가 納入한 保險料의 一部가 不實 保險會社의 被害補償에 사용되어 保險契約者間의 保險料 負擔의 公平性이 저해된다.
- ④ 뿐만 아니라 상당한 基金이 造成되지 않는 한 保險會社의 不實化와 倒産時에 完全한 補償이 不可能하다.

이상의 理由때문에 保險保證制度가 存在하고 있다고 하여도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의 “選別의 原理”가 실현되기에는 많은 問題를 주게 된다.

세째로, 自由競爭을 통하여 競爭的 刺戟을 주게 되므로 生産性を 向上시킨다는 自由競爭의 “生産性 向上의 原理”가 保險市場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競爭에 의한 刺戟을 통하여 保險者는 費用을 절감하려고 努力하고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努力을 경주하게 되므로 生産성이 向上될 수 있는데 이러한 競爭의 肯定的 機能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 위하여서는 保險市場에서 需要者들이 어떠한 保險者가 價格, 質, 서어비스面에서 優秀한지 식별할 수 있는 能力과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保險市場에서는 — 特히 生命保險, 疾病保險, 傷害保險과 같은 家計保險 分野와 企業保險分野에서 中小企業에서는 — 대부분의 경우 保險需要者들이 市場洞察力을 크게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業者들이 競爭을 통하여 市場에서 優越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經營의 合理化 등의 努力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保險需要者들이 保險市場에서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상이한 保險者가 供給하고 있는 保險商品의 內容, 質, 條件 등에 대하여 하나 하나 比較·檢討하기 위한 努力을 경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自由競爭을 통하여 生産性を 어느 정도로 向上시킬 수 있으나 그 效果는 그리 크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네째로 自由競爭을 통하여 資源의 最適配分の 原理가 실현될 수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勿論 自由競爭을 통하여 不良한 限界企業이 倒産하는 것이 아무 問題가 없으면 資源의 最適配分の 原理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保險市場에서 保險會社의 破産은 被保險者의 權益保護와 經濟社會의 側面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自由競爭을 통한 資源의 最適配分の 原理가 保險市場에서 가능한 한으로 실현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의 原理가 附屬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否定的인 影響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原理를 保險市場에 導入하는데는 制約과 限界性이 있게

19) Farny, Dieter : Die Versicherungswirtschaft im Wettbewerbskonzept der Mark twirtschaft, In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9. S. 72/73.

20) Von Detlev von der Burg : Die Versicherungswirtschaft in Recht und Praxis auæerdeutscher Kartellgesetze, In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0. 60. Band : S. 459~469.

된다.

따라서 企業間의 競爭을 規制하는 行爲를 法으로 禁止하고 있는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保險事業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保險事業은 이러한 法에 適用 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다.²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市場의 特殊性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의 原理가 適用되고 實現되는 데에는 많은 問題點을 주게 된다.

競業政策의 目的은 自由競爭이 주는 諸般 肯定的인 影響을 얻기 위하여 競爭의 自由를 保障하고 競爭을 促進시키려는 것이며 결코 自由競爭이 주는 否定的인 影響을 주는 것까지도 保障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國家의 保險產業에 대한 競業政策의 方向은 自由競爭이 주는 諸般 肯定的인 影響을 最大限으로 하는 反面에 競爭이 주는 逆機能의인 影響을 最大限으로 抑制하는 方向에서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²¹⁾

이러한 方向으로 競業政策에 대한 研究를 하기 위하여 有效競爭(workable competition)의 理論이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바람직하고 效果의인 競爭을 가져올 수 있는 方向에서 競業政策의 手段과 方法을 研究한 理論이라 할 수 있다.

保險產業에 있어서 어떠한 競爭이 有效한 競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論議와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學者들과 實務者들은 保險市場에서 恒久的으로 熾熱한 競爭이 誘發될 수 있는 潛在性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파괴적인 競爭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保險者 자신만이 倒産하는데 그치지 않고 多數의 被保險者의 權益에도 심각한 被害를 주게되므로 이러한 過當競爭行爲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保險市場에서 業者相互間의 競爭行爲를 완전히 制限하거나 規制하게 되면 自由競爭이 주는 제반 이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Braeß는 “保險會社에 대한 國家의 競業政策은 일면에서는 過當競爭으로 인한 被害를 防止하고 他面에서는 競爭行爲에 대한 지나친 規制措置를 삼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람직한 競爭은 過當競爭도 아니고 最小競爭도 아닌 “適正競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勿論 “適正競爭”이 가장 바람직한 競爭이라는 事實은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어떠한 競爭이 適正競爭인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Braeß教授의 제자인 Farny教授는 이러한 缺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競爭은 熾熱한 破壞的 競爭과 競爭을 全面禁止하는 그러한 兩極線上에 어떠한 곳에 놓여 있는데 이는 靜的인 것이 아니고 市場의 狀況과 與件의 變化와 保險者의 行動에 따라서 不斷히 變化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의 原理의 導入, 實施에는 限界性和 制約性이 존재하고 있다.

21) 趙海均: 保險產業에 대한 競業政策의 方向에 관한 研究, -適正競爭施策 상계서, 339面.

22) Braeß, Paul: Über die Wettbewerbskonzeptio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Die Versicherungs Rundschau, Sonderdruck 1968. S. 4.

23) Farny, Dieter: Die Versicherungsmärkte, a.a. O. S. 43.

그러나 Braeß教授가 有效競爭理論을 主張하는 바와 같이 “競爭으로 인한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의 權益保護에 問題가 없으며, 또한 競爭으로 인한 獨占의 現象이 나타날 虞가 없는 한 保險市場에서 가능한 한으로 競爭을 促進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는 點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反論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損害保險分野에서 保險料率의 自由化를 어떻게 하는 것이 有效競爭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V章과 VI章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IV. 우리나라 損害保險產業에 있어서 競業規制措置의 內容과 競業規制緩和措置의 必要性

1. 競業規制措置의 不可避性과 競業規制措置의 一般의 內容

우리나라에서는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의 權益保護와 保險產業의 健全한 育성과 發展을 기한다는 名目으로 60年度부터 保險市場이 開放되기 이전까지 保險業者 相互間의 競爭行爲를 國家가 지나치게 規制하고 制限하여 왔다.

勿論 60年代와 70年代 初盤까지만 하여도 國民의 保險에 대한 不安定, 미흡한 經濟發達 등 保險產業이 發展할 수 있는 諸般與件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保險者側에서는 保險技術의 未熟과 經驗의 不足, 擔保力의 脆弱性, 統計資料의

不足 등의 問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保險產業이 幼兒의 發展段階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與件과 狀況에서 保險業者 相互間의 切절한 競爭行爲는 保險產業의 發展을 위하여서는 물론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權益保護 側面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保險者 相互間의 競爭行爲를 規制하고 抑制하는 그러한 政策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 당시 國家가 保險業者의 競爭行爲를 規制하고 抑制하는 措置는 다음과 같다.

- ① 嚴格한 免許主義에 의한 新設社의 市場參入의 強力한 規制와 抑制
- ② 保險商品 및 料率에 대한 嚴格한 規制
- ③ 業者相互間의 競爭行爲를 制限하고 規制하는 料率에 관한 協定과 其他 協定(Pool協定, 代理店手數料支給에 관한 協定)을 許容하고, 이에 遵守를 엄격하게 指導, 監督하였다.
- ④ 販賣組織의 形態, 設置, 運營 등에 측면에서 엄격한 規制와 統制
- ⑤ 損害保險 分野에서 Pool制度의 導入
- ⑥ 再保險交換規程에 의하여 再保險方法, 再保險形態, 出再 및 受再限度 등의 規制

그 當時 認可料率制度和 協定料率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保險料가 비교적 높게 策定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保險者에게 높은 超過利潤이 발생하여야 하였으며, 그러한 초과이익은 料率의 引下, 商品開發의 促進, 서비스의 向上 등이나 擔保能力의 擴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24) Braeß, Paul : Über die Wettbewerbskonzeptio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 Die Versicherungsrundschau, Sonderdruck 1968. S. 4.

25) 趙海均 : 保險產業에 대한 競業政策의 方向에 관한 研究 - 適正競爭施策의 方向 - 전게서, 46面.

그 당시 業者相互間에 契約高와 販賣高를 높이
기 위하여 保險料의 割引, Rebate의 方法, 外上賣
出, 事業費의 過多支出 등의 方法을 사용하여 치
열한 販賣競爭, 募集競爭을 벌임으로서 保險會社
의 財務構造와 擔保力이 惡化되었으며, 一部保險
會社の 경우 保險金의 支給不能 事態까지도 가져
오게 한 例도 있었다.

그 당시 損害保險分野에서 保險料가 매우 높게
策定되어 있었으며, 損害率도 별로 높지 않았지만,
保險事業이 Cash flow underwriting 戰略을 추구
하였기 때문에 事業費가 總收入保險料의 50~60
%까지 되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당시 販賣
競爭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였는가를 단적으로說
明하여 준 例라고 말할 수 있다.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損害保險
産業이 過去에는 幼兒의 段階에 있었으며 保險事
業의 經營與件이 造成되지 않은 狀況에서 치열한
販賣競爭 募集競爭을 하였기 때문에 國家가 保險
者 相互間の 競爭行爲를 強力하게 規制하고 抑制
하는 그러한 政策은 不可避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損害保險에 있어서 現行 保險料率規制制度

우리나라 損害保險分野의 料率은 保險業法 第7
條(認可事項)에 따라 認可料率制度를 채택하고 있
어 政府가 保險料率을 엄격하게 規制하고 있다.

非認可料率(自由料率)을 사용하는 分野는 統計
資料의 不足으로 國內에서 料率을 算定하기 困難
한 分野(船舶保險, 原子力保險, 動物保險, 유리보
험)와 保險의 性格上 外國會社에 加入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保險分野(輸出積荷保險) 등의 극히 一部

保險分野이다.

協定料率體制下的 料率은 協定料率書(Tariff
rate)의 料率과 業者間の 料率求得에 관한 協定에
근거한 再保社求得料率(Non-Tariff Rate, 非協定
料率)로 區分된다.

協定料率(Tariff Rate)의 對象이 되는 것은 대
부분 家計性 保險分野의 物件으로서 商品의 構成
이 單純하고 標準化가 可能한 것, 保險契約者數가
多數인 保險, 그리고 大數法則이 適用될 수 있는
그러한 保險分野의 物件이다.

非協定料率(Non-Tariff Rate, 求得料率)에 對象
이 되는 것은 대부분 企業保險物件으로서 再保險
依存도가 높고, 保險契約者數가 小數인 保險, 大數
法則이 適用困難한 保險, 商品構造가 複雜한 保險,
專門性과 高度의 技術이 要求되는 保險分野이다.

또한 料率適用時에 underwriter가 付保危險의
危險度에 따라서 rating할 수 있도록 伸縮性을 주
는가 주지 않는가에 따라서 範圍料率과 固定料率
로 區分되고 있으나, 範圍料率은 英文約款을 使用
하는 一部保險種目の 分野에서만 使用하고 있어,
料率 適用時 伸縮性과 彈力性이 缺如되고 있다.

또한 料率體系面에서 等級料率體系와 個個의 付
保危險에 危險度에 따라서 rating할 수 있는 個別
料率體系가 있는데 保險分野에 特性에 따라서 等
級料率體系와 個別料率體系를 使用하고 있는 分野
가 서로 상이하다.

다음의 表는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料率形態를 保
險種目 分野別로 區分한 것이다.²⁶⁾

26) 損害保險 料率制度, 財務部 保險局, 損害保險政策 參考資料 88-2, 1988年 8月, p.42.

- 보험개발원요율
- 기 타

— 20 —

3. 競業規制措置의 矛盾點과 競業規制緩和措置의 必要性

保險產業에 대한 國家의 競業政策은 時代的 條件과 狀況變化에 適合하게 수립하고 그 規制措置의 對象과 內容은 물론 그 規制手段도 이러한 變化에 對應하여 彈力性있게 선정하여 실시하여야만 그 實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政策當局은 保險市場이 開放되기 이전까지 競爭秩序를 바로잡고 業者相互間의 熾熱한 競爭으로 인한 被害를 防止함으로써 被保險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保險產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美名下에서 지나치게 競爭行爲를 規制하고 制限하여 왔다.

그 結果 保險事業은 競爭의 刺戟에 의하여 自救의 競爭能力을 培養하고 效率적이고 合理的인 事業運營으로 保險料의 引下, 商品 및 서어비스의 改善등의 諸般 肯定的인 效果를 얻을 수 없었으며, 不良한 保險者를 溫床에서 保護하여 주고 優良한 保險者의 士氣와 創意力を 低下시켰으며 保險產業의 固有의 核心業務라 할 수 있는 Underwriting技術과 能力을 培養할 수 없게 하는 등 많은 弊端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保險市場의 開放壓력과 外國 保險會社의 國內進出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政策當局의 지나친 競業規制措置로 인하여 國內保險產業이 競業能力을 培養하지 못하고 脆弱한 經營基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最近에 와서 經濟의 自由化, 開放化, 世界化와 地域主義擴散 등의 外的環境與件 變化에 對處하기 위하여 諸產業分野에 있어서 國際競爭力을 提高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절실히 느끼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諸產業分野에서 國家의 規制를 緩和하고

競爭原理를 導入·實施하여야 한다는 事實을 學界에서는 물론 行政當局에서도 認識하게 되었다.

특히 保險產業의 경우 市場의 全面開放이 豫想되고 金融產業의 開放에 따른 金融產業의 綜合化, 受信·與信金利의 自由化가 豫想된다.

따라서 保險市場에서 우리나라 保險會社は 그들 相互間의 競爭뿐만이 아니라 外國保險會社와 類似保險(共濟事業과 遞信保險事業)과도 競爭하여야 하며, 銀行, 信託會社 등의 金融機關과도 相互 熾熱한 競爭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保險政策當局은 이러한 事實을 認識하여 保險市場에서 業者相互間의 競爭行爲를 지나치게 制限하고 抑制하는 過去의 政策 대신에 公正하고 適正한 競爭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保險產業이 自救의 競爭能力과 創意力, 革新能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競業政策의 方向을 大轉換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政策當局이 實施하여온 競業規制緩和措置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火災保險 Pool의 段階的 解體(1992년까지)
- ② 損害保險分野에서 協定料率分野의 축소
- ③ 再保險의 自律化 擴大
- ④ 商品開發의 自律性 擴大(file & use制度=申告後 販賣制度, use & file制度=販賣後 申告制度의 導入 實施)
- ⑤ 生命保險分野에서 契約者 配當의 段階的 自律化 實施

또한 政策當局은 점진적으로 保險市場에서 競爭原理를 導入·實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였다.

- ① 保險保證基金制度의 導入·實施
- ② 經營評價指標에 의한 保險會社에 대한 指導

業務의 強化

③ 保險會社에 대한 情報公示業務의 實施

最近에 美國과 EC國家에서는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에서 自由競爭行爲를 規制하는 國家의 法律的 措置나 保險者間的 協約이 自國의 保險會社가 우리나라 保險市場에서 競爭力을 발휘하는데 障害가 되고 있음을 認識하여 “保險料求得에 관한 協定”과 “國內優先出再制度”를 削除할 것을 要求하고 海上積荷保險에 대한 cross-border許容, Broker 및 獨立代理店의 許容,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 事業의 許容등을 부단히 우리 政府側에 要求하고 있다.²⁷⁾

上記한 理由때문에 政策上으로도 競業規制措置를 시의적절하게 緩和하는 것이 필요하다.

問題가 되는 것은 결코 規制를 贊成하느냐 反對하느냐에 있지 않다.

단지 外國과의 通商摩擦을 피하면서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에서 有效競爭의 效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規制措置를 어떻게 緩和하고, 規制緩和의 分野와 內容이 무엇이며 어떠한 規制緩和의 手段을 어떻게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政策上으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이다.

V. 損害保險市場에 있어서 價格形成과 料率自由化의 限界性

1. 保險市場에 있어서 價格形成理論

일반적으로 商品의 價格을 引上하면 販賣量은

떨어지고 反對로 價格을 引下하면 販賣量은 增大된다는 事實은 經濟學의 基本原理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市場은 다른 市場과는 달리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價格을 變動한다고 하여도 販賣量의 變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保險需要者들은 市場洞察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市場에서 價格이 變動된 事實을 알지 못하고 또한 人的優越性이 存在하기 때문에, 價格이 他會社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전과 같이 그 會社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록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特定한 保險會社가 保險市場에서 그의 販賣量을 크게 감소시키지 없이 그의 販賣價格을 무조건 많이 引上할 수 없다. 保險者에게는 그가 價格을 自由롭게 引上할 수 있는 上限線이 存在하는데, 만약에 價格上限線 보다도 더 높게 價格을 策定하여 販賣할 경우에는 많은 顧客이 他會社로 移動하게 되고 또한 그 會社에 新規契約締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販賣量은 급격하게 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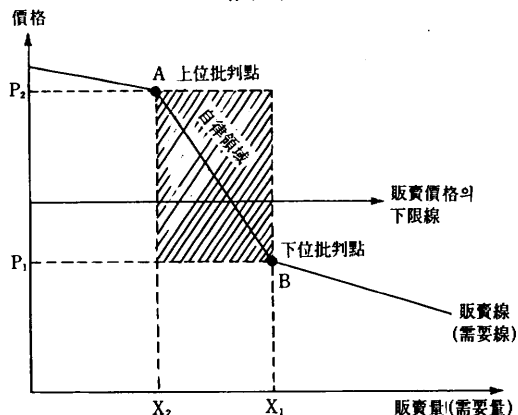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保險者에게는 價格을 引下시킬 수 있는 下位批判點이 存在하는데 한 保險會社가 下位批判點 以下로 價格을 引下하면 他保險會社에 加入한 者와 潛在的 保險需要者들이 이 事實을 알게되어 下位批判點 以下の 價格으로 販賣하는 保險會社의 販賣量은 급격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이 保險市場에서 나타남을 Braeß教授가 최초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圖示하면 〈圖 1〉과 같다.²⁸⁾

27) 박상태 : 損害保險產業의 開發方案, 協會創立 45週年記念 特別座談, 損害保險, 1990. 8. 27面.

28) Farny, Diter : Die Versicherungsmärkte, a.a.O. S. 158.

(圖 1)



上記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販賣線(需要線)은 一直線이 아니고 二重의로 굴절되어 있다. 한 保險會社가 P_1 과 P_2 간에 價格을 임의적으로 變動시켜도 販賣量에는 별 큰 變化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價格을 上位批判點 P_2 以上으로 引上할 경우 그의 販賣量은 급속하게 減小하게 된다.

反對로 價格을 下位批判點 P_1 이하로 引下하면 그의 販賣量은 급격하게 增加하게 된다.

保險者가 價格을 自律的으로 策定할 수 있는 自律領域은 사선을 친 部分인데, 이는 販賣線 AB의 길이와 AB線의 傾斜度에 의하여 決定된다. 즉, AB線의 길이가 길수록 또한 AB線의 傾斜도가 급격할수록 保險者의 自律領域의 幅(P_1 과 P_2 의 사이)은 그만큼 넓어진다.

保險市場에서 保險會社가 판매량에 현저한 변동이 없이 自律的으로 價格을 變動할 수 있는 自律領域의 幅($P_1 \sim P_2$ 사이)은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의 程度 특히 人的優越性的의 크기와 市場洞察力의 정도에 의존한다.

즉, 顧客이 特定會社와 人的 關係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人的優越性的의 存在) 保險會社는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이 커진다. 또한 顧客이 保險市場에서 價格 및 商品의 質에 대한 知識을 缺如할수록(市場洞察力의 缺如) 保險會社의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은 커진다.

保險市場은 進술한 바와 같이 他市場에 비하여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保險會社에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은 비교적 크다.

이 自律領域內에서는 保險會社는 獨占의 位置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個個의 保險會社가 각기 상이한 價格을 策定하여 使用하더라도 價格이 販賣量의 變動에는 별로 큰 影響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以上이 Brae教授의 “保險市場의 價格理論”이라 할 수 있다.

Brae教授의 弟子인 Farny는 Brae教授의 理論을 더욱더 發展시키기 위하여 價格의 自律領域內에서 한 保險會社가 任意的으로 價格을 變動할 경우 다른 保險會社들이 價格變動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를 살펴보았다. Farny는 反應하는 경우와 反應하지 않는 두가지 경우를 區分하고, 어떠한 경우에 反應하고 어떠한 경우에 反應하지 않는가를 理論的으로 說明하였다.²⁹⁾

① 他保險會社가 反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AB線의 傾斜도가 높고 多數의 保險會社가 市場에서 相互競爭하고 있어 한 保險會社의 價格變動이 他保險會社의 販賣量에 별 큰 影響을 주지 않는 때이다.

29) Farny, Dieter : Die Versicherungsmärkte,a.a. O. S. 159.

② 他保險會社가 反應할 경우 :

이 경우는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적게 가지고 있어 AB線의 傾斜度가 매우 완만하고, 또한 保險市場에서 小數의 會社들이 相互競爭하고 있기 때문에 한 保險會社의 價格變動이 他保險會社의 販賣量에 매우 큰 영향을 줄 때이다.

Farny³⁰⁾에 의하면 保險市場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保險會社가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하는 가는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 程度와 保險者의 數에 依存한다는 것이다.

즉,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 程度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保險市場에서 供給者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즉, 多占競爭市場일 경우), 保險會社는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保險市場에서 供給者數가 적으면 적을수록(즉, 獨寡占競爭市場), 保險會社는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을 한다는 것이다.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할 경우 競爭會社들이 제각기 販賣量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價格을 어느 정도까지 引下하여 販賣할 것인가? 즉, 販賣價格의 下限線을 얼마로 할 것인가?

Rohrbeck³¹⁾와 Gürtler³²⁾는 保險事業을 詐欺的으로 運營하지 않는한 販賣價格의 下限線은 純保險料(補償金 支給에 해당하는 保險料)에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費用(管理費)을 加算한

金額에 해당하는 線에서 決定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販賣價格의 下限線은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價格의 下位批判點 P_1 보다도 높게 있다고 主張하였다.

Farny는 販賣價格의 下限線이 價格의 下位批判點 P_1 보다도 높게 있다는 이러한 主張은 모든 個個의 保險會社의 實際損害率이 모두 同一하고 一定不變일 경우에만 옳바르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個個의 모든 保險會社의 實際損害率이 모두 同一하고 一定不變일 경우에는 保險生産의 類似性 때문에 모든 保險者에 保險保護의 價格(保險給付 產出單位原價)이 一定하기 때문에 保險事業을 合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서는 保險保護價格 以上으로 販賣價格을 策定하여 販賣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個個의 모든 保險會社의 損害率이 모두 同一하고 一定不變하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 非現實의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保險會社는 價格을 下位批判點 P_1 과 上位批判點 P_2 內에서만 自律的으로 策定하게 되기 때문에 保險市場은 安定이 된다.

그러나 個個 保險會社의 實際損害率이 상이하고 變動이 있는 경우에는 個個 保險會社가 策定할 價格下限線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補償額은 事後에 發生할 未確定額이기 때문에 保險會社가 未來의 保險事故發生의 程度를 悲觀的으로 보느냐 樂觀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30) Farny Dieter : Die Versicherungsmärkte,a.a.O. S. 160

31) Rohrbeck, Walter : Das Preisproblem in der Individualversicherung, In : ZFVW 1933, S. 207f

32) Gürtler, Max : Die Kalkulation der Versicherungsbetriebe, Versicherungswirtschaftliche Veröffentlichung, Heft 1, 2, Anfe. 1. Berlin 1958. S. 317ft.

保險會社가 販賣價格을 下位批判點 P_1 보다도 높게 策定하거나 또는 낮게 策定하게 된다.

만약에 保險會社들이 價格의 自律領域인 P_1 과 P_2 범위내에서 販賣價格을 策定한다면 保險市場에서 치열한 競爭은 相互誘發되지 않게되기 때문에 保險市場은 安定的으로 된다.

그러나 한 保險會社가 販賣量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販賣價格의 下限線을 價格의 下位批判點을 P_1 이하로 策定하여 販賣한다면 다른 保險會社들도 競爭의으로 價格을 引下하게 되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치열한 競爭이 나타나게 된다.

個個의 保險市場이 完全市場의 性格(市場洞察力의 存在, 人的優越性的 存在)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한 市場에서는 그만큼 치열한 競爭이 誘發될 수 있는 可能性은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Farny는 保險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은 價格에 거의 아무런 影響을 주지 않으며, 價格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는 것은 費用狀況이라고 主張하였다.³³⁾

Rohrbeck³⁴⁾도 需要와 供給法則은 保險市場에서 價格形成에 補助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價格의 調整者는 市場이 아니며 保險料 算定の 基礎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2. 價格形成理論의 非現實性和 矛盾點 및 料率自由化의 限界性

지금까지의 Farny의 “保險市場에 있어서 價格形成理論”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Farny는 Brae教授의 保險市場의 價格理論(保險市場은 다른 市場과는 달리 不完全市場의 性格

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各保險會社가 그의 販賣價格을 一定한 범위내에서 自律的으로 策定·使用하여도 그의 販賣量에는 별로 큰 影響을 미치지 않는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P_1 부터 P_2 사이)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 自律領域內에서 各保險會社는 獨占的 位置를 차지한다. 그리고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은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 程度 특히 人的優越性和 市場洞察力의 크기에 의존한다.)의 타당을 實證的인 研究과 調査가 없이 形式論的이며 論理的으로 確認하려 하였다.

Farny에 의하면 保險市場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保險會社들이 他保險會社가 販賣價格을 變動했을 경우에 反應하는가 反應하지 않는가는 供給者의 數와 市場의 不完全性的 程度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保險市場에서 供給者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保險市場이 不完全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保險市場에서 價格의 自律領域의 幅은 크기 때문에 保險會社들은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保險市場에서 供給者의 數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保險市場의 不完全性的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保險市場에서 價格에 自律領域의 幅은 작기 때문에 保險會社들은 他保險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한다는 것이다.

또한 Farny는 競爭關係에 있는 保險會社들이 他會社의 價格變動에 反應할 경우 이들이 販賣價格의 下限線을 價格의 下位批判點 P_1 보다도 높게 策定할 경우에는 保險市場에서 치열한 競爭은 誘發되지 않기 때문에 保險市場은 安定的으로 되지

33) Farny, Dieter : Die Versicherungsmärkte,a.a. O. S. 164.

34) Rohrbeck, Walter : Das Problem in der Individualversicherung, a.a. O. S. 207f.

만, 販賣價格의 下限線을 價格의 下位批判點 P_1 보다도 낮게 策定할 경우에는 保險市場에서 치열하게 料率引下競爭이 나타나게 되어 保險市場은 不安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Farny의 상기한 主張은 너무나도 形式論의인 主張이고 실제의 實務의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Farny는 保險市場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他保險會社가 價格變動에 反應하는가 反應하지 않는가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단지 供給者의 數와 保險市場 不完全性의 程度만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保險者가 未來의 損害率을 樂觀적으로 보느냐 悲觀적으로 보느냐, 保險會社가 內實爲主보다도 實績爲主의 戰略을 추구하느냐, 國民經濟적으로 資金의 供給보다 需要가 많아서 金利가 높기 때문에 保險會社가 Cash flow underwriting戰略을 추구할 수 있는 與件이 存在하는가 등에 따라서 保險市場에서 競爭樣相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現在의 實狀에서 보면 Farny의 理論은 전연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保險市場의 실제적인 규모에 비하여 保險會社의 數만 너무나 많아서 保險市場에서 치열하게 競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保險會社들이 長期的利益보다도 短期的利益추구에 급급한 실정이다. 뿐만이 아니라 保險料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Cash flow underwriting戰略을 추구하기 위하여 保險料의 割引, Rebate의 支給, 外上賣出, 事業費의 過多支出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치열하게 募集競爭, 販賣競爭을 추구하고 있어 保險會社의 財務構造를 惡化시키고 擔保力を 脆弱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狀況하에서 保險料를 自由化한다면 競爭關係에 있는 保險會社들이 제각기 競爭으로 販賣量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販賣價格을 價格의 下位批判點 이하로 策定, 使用하려고 하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치열한 파괴적인 競爭構想이 나타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國內保有가 가능한 家計性保險物件과 中小企業物件에 경우에는 販賣競爭에서 지지않기 위하여 販賣價格을 販賣原價(保險料算定時 豫定한 原價)보다도 낮게 策定하여 販賣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付保危險을 올바르게 評價하여 그 危險度에 적합한 保險料를 받고 事業을 運營하려는 그러한 健全하고 良心的인 保險會社가 投機的이며 射倖의으로 保險事業을 運營하려는 그러한 不良한 保險會社보다도 時間的으로 먼저 破산될 수가 있다. 반면에 販賣量의 增大만을 위하여 保險料를 터무니없이 낮게 策定, 使用하는 不良하고 射倖의인 保險會社는 —保險料收入과 保險金支給間에 時差가 있기 때문에— 一定한 期間동안 保險市場에서 脫落되지 않고 保險市場에서 價格의 優越性을 確保됨으로서 販賣實績이 급속하게 증대될 것이다.

以上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外國에 出再가 불필요하고 國內保有가 可能한 家計性保險分野와 中小企業物件保險分野에서는 料率自由化를 통하여 肯定的인 效果보다도 否定的인 效果만을 주게되기 때문에 이 分野에서는 料率의 完全自由化에는 限界性이 存在하게 된다.

그러나 國內原受社의 擔保能力의 限界때문에 外國의 出再가 불가피한 巨額企業物件保險分野에서는 危險을 引受할 外國再保險社로부터 保險料, 保

險條件 및 再保險引受限度를 求得받아 이를 사용
하기 때문에 國內原受社가 販賣量의 增大를 기하
기 위하여 保險料를 保險原價보다도 낮게 策定할
수 없다.³⁵⁾ 따라서 이러한 保險分野에서는 파괴적
인 料率引下競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分野에서는 保險商品 및 保險料率
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VI. 損害保險市場에 있어서 保險料率 의 自由化 方案

1. 基本的 政策의 方向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그 自體가 目的이 될 수
없으며 競業政策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手段에 불과하다. 따라서 料率의 自由化는
料率競爭이 주는 諸般 肯定的인 影響을 얻기 위해
競爭의 自由를 保障하고 競爭을 促進시키려는 것
이지 결코 料率自由化가 주는 否定的인 影響까지
도 保障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保險料率의 自由化 方向은 保險料率의
自由化가 주는 諸般 肯定的인 影響을 最大限으로
하는 반면에 保險料率의 自由化가 주는 逆機能的
인 影響을 最大限으로 規制하고 抑制하는 方向에
서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市場은 不完全市場의 性
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保險生産, 供給이 容
易하고 無限의이며 保險需要創出의 困難性和 限界

性때문에 保險市場에서 恒久的으로 熾烈한 販賣競
爭이 誘發될 수 있는 可能性이 潛在하고 있다. 따
라서 保險市場에서는 一他産業分野에서와는 달리
一 完全自由競爭의 原理를 실시하는데 制約과 限
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競爭인 “有效競爭”의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保險分野에서 어떻게 料率規制緩和措置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만 強調하고 싶은 것은 料率規制緩和에 대한
바람직한 政策의 方向은 有效競爭이 나타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一部 外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規制緩和狀況을
신중하게 검토함이 없이 성급하게 料率規制를 緩
和하는 것 보다도 段階的으로 適正한 競爭을 誘發
시키도록하는 政策的인 配慮가 필요하다.

損害保險市場은 生命保險市場과는 달리 性格이
서로 相異한 많은 種類에 保險分野가 있으며 또한
外國에 出再가 不必要한 保險分野(家計性保險分
野)³⁶⁾와 外國에 出再가 必要한 保險分野(大型企業
保險分野)가 있다.

料率規制緩和措置가 各保險分野에 상이한 영향
과 상이한 競爭效果를 주기 때문에 料率自由化와
그 對應方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保險分野를 편의상 家計性保險分野와 大型
企業保險分野로 區分하기로 한다.

2. 家計性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自由化의 困難性和 그 對應方案

35) 再保險市場에 있어서 保險料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損害狀況 뿐만이 아니라 再保險市場의 引受能力, 再保險費用, 競爭
狀況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나, 長期的으로 보면 再保險市場에서 保險料는 保險原價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Manes, Alfred : Versicherungswesen, Band I. 5. Aufl S. 186.

36) 家計性保險分野란 家計保險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保險分野 뿐만이 아니라 外國에 出再를 필요로 하지 않는 中小企業物
件에 대한 保險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家計性保險分野에서 料率競爭을 完全自由로 하면 各 保險會社가 상이한 質(擔保力)의 商品을 價格으로 販賣하게 되는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保險市場에서 料率이 自由化가 順機能的인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하여서는 保險加入者들이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保險會社에 保險加入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判斷하고 유리한 保險會社를 찾아서 保險契約을 締結하려는 努力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된다.³⁷⁾

그러나 家計性保險需要者들은 일반적으로 保險에 대한 知識을 缺如하고 있으며 市場洞察力을 크게 缺如하고 있다. 또한 市場洞察力이 있다고 하여도 各 保險會社들의 商品의 質(擔保力)과 價格을 상호비교하여 가장 값싸고 信賴性있는 保險會社를 골라서 保險契約을 締結하려는 努力을 경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保險需要者들은 이러한 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되는 自由競爭狀況에 대하여 不滿과 不評을 하게 될 것이다.³⁸⁾ 따라서 保險需要者들은 保險商品의 價格·質·內容 등을 비교·판단하여 購買하기 보다는 人的局面에서 受動的으로 행하거나 保險會社의 名聲에 의하여 購買하게 된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保險會社가 價格의 優越性を 確保하여 販賣量を 增大시키기 위하여서는 保險料를 다른 會社들 보다도 매우 낮게 策定하여 販賣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한 會社가 價格을 引下하면 他會社들도 競爭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價格은 引下하게 되어 파괴적인 競爭狀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家計性保險市場에서는 현재 保險會社들이 Cash flow underwriting 戰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料率을 完全自由化하면 이러한 파괴적인 競爭狀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파괴적인 競爭狀況에서 良心的이고 健全한 保險會社가 射倖的이며 不良한 保險會社보다도 時間的으로 먼저 脫落될 염려가 있다.

上記한 理由때문에 家計性保險分野에서는 料率自由化는 制約이 따르므로 困難하다.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볼때 家計性保險市場에서 料率競爭을 통하여 有効競爭의 效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이 先行되어야 한다.

- ① 保險需要者들이 保險에 대한 專門的知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保險需要者들이 合理的이며 經濟的인 觀點에서 購買決定을 하는 風土가 造成되어야 한다.
- ③ 保險需要者들이 市場洞察力을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合理的이며 經濟的인 觀點에서 意思決定을 하기 위하여 많은 情報費用이 必要하기 때문에 公的機關이나 私的機關 등에서 保險會社에 대한 各種情報(商品條件, 料率 財務狀況에 대한 情報)를 比較公示하도록 하고 이를 一般人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信賴性있는 保險仲介人(broker) 制度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 ⑤ Broker에 대한 認識이 우리 國民들에게는

37) Farny, Dieter : Regulierung von Versicherungsmärkten, Wettbewerb und Kundenwünsche im Versicherungsgeschäft, a.a. O. S. 1474

38) Farny, Dieter : Regulierung von Versicherungsmärkten, a.a. O. S. 1474

좋지 않기 때문에 保險broker의 役割이 무엇인가를 알려져 國民들이 이들에 대한 認識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⑥ 保險會社가 스스로 保險條件과 保險料를 算定할 수 있는 技術과 統計資料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上記한 條件이 갖추어 지지 않은채 성급하게 料率競爭을 完全自律的으로 실시하게 한다면 料率規制緩和에 의하여 有効競爭의 效果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도리어 規制緩和가 逆機能的인 役割을 하게 할 可能性을 다분히 가지게 된다.

上記한 完全競爭의 前提條件이 갖추어질 때까지 保險契約者 權益保護와 우리 損害保險產業의 國際競爭力를 強化하기 위하여 個個保險分野別로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自動車保險分野

自動車保險分野에서는 料率의 自由化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 損害率이 豫定損害率보다도 매우 높아 9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保險會社의 經營不實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주로 外的要因(物價引上, 人件費, 修理費 및 治療費 등의 引上, 道德的危險의 增大 擴散)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料率自由化는 오히려 逆機能의 影響만을 주게 된다.

自動車保險分野의 料率自由化는 —美國의 많은 洲에서 이미 체험한 바와 같이— 保險料의 引下效果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保險料가 매우 높게 引上될 수 있는 結果를 주기 때문에 料率自由化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自動車保險에 있어서 保險料率은 現行과 같이 認可料率, 協定料率로 하되 保險料의 引上要因이 있으면 시기적절하게 保險料를 調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保險會社의 投資收入을 철저히 관리하고 保險會社의 利益(營業利益+投資利益)을 一定한 水準³⁹⁾에서 規制하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 마련하여야 한다. 會社에 利益을 制限하는 措置는 協定料率로 하고 있는 모든 損害保險分類에서 共同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長期保險

生命保險과 같이 保險期間이 長期이고 貯蓄性的性格을 가지고 있는 長期保險分野에서는 料率의 自由化를 유보하고 契約者配當競爭만을 金利의 自由化와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으로 擴大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契約者配當競爭은 保險需要者들에게 價格比較를 困難하게 하여 競爭的刺戟을 적게 주지만 情報公示制度를 통하여서나 新聞紙上이나 消費者團體 등을 통하여 各保險會社의 配當實態와 財務狀況의 健實性 등의 實態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保險會社가 內實爲主의 經營과 競爭力能力의 提高를 위한 經營合理化 努力을 傾注하도록 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自動車保險分野에서와 같이 保險會社의 利益을 一定한 水準에서 規制하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火災保險

39) 保險會社에 대한 利益의 規制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公金利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에서 規制하고 있다.

火災保險分野에서는 保險料率이 國文約款料率과 英文約款料率로 二元化되어 있다. 國文約款은 認可料率이며 協定料率로 되어 있으며 英文約款은 求得料率이며 非協定料率 個別料率로 되어 있는데 國文約款에 비하여 英文約款이 全體的으로 保險條件이나 價格面에서 유리한 실정이다.

英文約款의 使用을 特定物件에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料率適用上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國文約款과 英文約款의 內容을 一元化시키고 約款의 內容을 단순화, 용이화하고 保險料는 認可料率, 協定料率로 하되 料率適用과 料率體系의 彈力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範圍料率과 個別料率 制度를 導入하여야 한다.

또한 損害率에 따라서 保險料를 適時에 引上引下 調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保險會社의 利益을 一定한 水準에서 制限하도록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4) 保證保險

保證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分野에 있어서 損害率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어 經營收支를 惡化시키고 自己資本까지도 잠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經營不實의 根源의 要因은 그릇된 料率制度나 그릇된 料率規制에 있지 않고 實績爲主의 販賣政策, 主人意識의 缺如, 道德的危險管理의 輕視 등에 있다.

이 分野에서 料率自由化는 保險料의 引上만을 가져오게 하여 經營不實의 責任을 善良한 保險契約者들에게 전가시키는 結果만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料率自由化는 오히려 逆機能的인 影響만을 주게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分野에서 필요한 것은 會社의 運營責任者를 主人意識과 責任意識이 있는 者로 선정하여 經營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企業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自由化와 그 對應方案

生命保險市場과 같이 우리 損害保險市場도 開放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損害保險市場의 開放은 時間上의 問題로만 남아 있다.

現在 美國과 EC側이 要求하는 것은 國內優先出 再制度의 撤廢, 海上輸入積荷에 대한 Cross-border의 許用, 料率求得에 관한 協定の 撤廢, Broker 및 獨立代理店의 許用 등이다.

이러한 要求를 들어주면 우리 損害保險產業, 특히 企業保險分野는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企業保險需要者들은 家計性保險需要者들과는 달리 市場洞察力이 있기 때문에 價格·質·內容面에서 우리보다도 優秀한 外國會社와 保險契約를 締結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外國損保社들에 進出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損害保險產業이 自救的으로 競爭能力을 시급히 培養하도록 하는 政策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서는 保險產業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고 保險料率을 自由化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重要하다.

企業保險分野에서 料率의 自由化가 有効競爭의 效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家計性 保險分野와는 달리 企業保險分野에 있어서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順機能的인 影響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企業保險需要者들은 家計性保險需要者

들에 비하여 保險에 대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保險會社에 保險加入을 하는 것이 가장 有利한가를 判斷할 수 있다. 또한 企業保險需要者들, 特히 大型企業保險需要者들은 家計性保險需要者들과 같이 募集人 등의 勸誘, 說得이나 保險會社의 名聲에 의하여 購買決定을 하지 않고 保險商品의 價格, 條件, 質(擔保能力)을 比較·判斷하여 어느 會社에 保險加入을 하는 것이 가장 有利한 가를 생각하여 自己에게 가장 有利한 保險會社만을 찾아서 保險契約를 締結하려고 한다. 따라서 保險商品의 價格, 條件, 質面에서 不良한 保險會社は 保險市場에서 脫落하게 되고 適格者만이 市場에서 生存하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保險市場에서는 各保險會社들은 제각기 競爭에서 脫落하지 않기 위하여 經營의 內實化와 合理化 努力을 경주하고 創意력과 革新的能力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自由競爭의 肯定的 效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損害保險會社들이 Cash flow underwriting戰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料를 自由化하면 損保社들이 무조건 많이 販賣하여 輸入 保險料를 많이 거수하기 위하여 相互競爭의으로 保險料를 引下하려 하기 때문에 保險市場에서 破壞的競爭이 나타난다. “破壞的競爭이 나타나게 되면 危險을 올바르게 評價하여 그 危險度에 따라서 適정한 保險料를 받고 事業을 運營하는 그러한 健全하고 良心的인 保險會社가 投機的이며 射隼的으로 事業을 運營하는 그러한 保險會社들보다도 時間的으로 먼저 保險市場에서 脫落할 수 있다”는 主張은 企業保險市場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主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企業保險市場에서 引受하는 危險은 船舶·航空, 大型工場 등의 大型

危險(capacity risk)이기 때문에 國內損保力만으로 全額引受가 不可能하여 外國에 대부분 出再된다. 만약에 國內原受社들이 保險料 引下競爭을 하여 너무나 낮은 保險料를 받고 危險을 引受했을 경우 外國에 어떠한 再保險會社도 그 危險의 引受를 거부하기 때문에 國內損保社들이 販賣擴大를 위하여 치열하게 料率引下競爭을 한다고 하여도 터무니 없이 原價以下로 販賣하려는 그러한 破壞的 競爭을 할수 없게 된다.

以上の 이유때문에 家計性保險市場에서와는 달리 企業保險市場서는 破壞的 料率引下競爭이 나타날 것이란것은 杞憂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家計性保險分野에서와는 달리 企業保險分野에서는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順機能的인 影響을 주기 때문에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企業保險市場에서는 料率의 自由化가 順機能的인 影響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 損害保險產業이 現在 對外開放壓力에 對處하기 위하여도 國際競爭의 強化가 필요하기 때문에 料率의 自由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企業保險分野에서 保險料의 自由化는 우리損害保險產業의 타격을 최소화 하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損保市場開放時期에 맞추어서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實施하도록 政策의 方向을 設定하여야 한다.

個個保險分野別로 料率의 自由化方案을 간단하게 方向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火災保險分野

火災保險分野에서 現在 300만弗 以上の 保險物件의 경우에 外國에서 求得한 料率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料率과 條件面에서 有利한 英文料率

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火災保險約款은 英文約款과 國文約款으로 二元化되어 있는데 國文約款에 비하여 英文約款이 全體的으로 價格面이나 條件面에서 有利하기 때문에 料率適用上 衡平의 問題가 있다. 따라서 國文約款과 英文約款의 內容을 一元化시키고 保險料率도 外國水準에 맞추어 適正하게 調整해야 한다.

또한 現在 國文約款을 적용하는 保險物件의 경우 保險料率이 認可料率, 協定料率로 되어 있으며 料率適用과 體系面에서 경직성을 보여주어 固定料率, 等級料率로 되어 있다. 따라서 保險料를 認可料率, 協定料率로 하되 料率適用과 體系面에서 彈力的인 運營이 가능하도록 範圍料率과 個別料率制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現在 300만弗 以上으로 되어 있는 上限線을 1,000만弗로 引上하여 1,000萬弗以上の 保險物件의 경우 外國에서 求得한 料率로 使用하도록 하는데 原受社가 直接 海外에서 求得한 料率을 使用하게 하거나 現行과 같이 우리나라 再保社를 통하여 求得한 料率을 使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國內保有를 最大限으로 하기 위하여 國內引受能力을 超過하는 部分에 대하여서는 外國에 出再하도록 國內損保社와 再保社間의 協約(口頭)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原受社가 海外에서 料率을 求得할 경우 海外再保社名, underwriter名, 求得料率, 保險條件등을 料率適用時 行政當局이나 開發院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⁴⁰⁾

2) 船舶保險

船舶保險의 경우 500t미만인 경우 保險者가 自由裁量에 따라서 料率을 決定, 使用할 수 있는 自由料率로 되어 있으나 市場의 安定과 過當競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料率適用時 當局에 報告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準協定料率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500t 以上の 船舶은 海外求得料率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上向調整(例. 3,000t~5,000t)하고 國內船舶料率로 外國에 水準에 맞추어 적절하게 引下調整하도록 하고 料率體系의 彈力性を 주기 위하여 等級料率로 되어 있는 것을 船舶의 危險度에 따라서 料率을 決定할 수 있는 個別料率體系로 變更하여야 한다.

3,000t 以上の 船舶에 대하여서는 原受社가 直接海外에서 求得한 料率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再保社를 통하여 求得한 料率을 사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단, 火災保險分野의 경우와 같이 國內保有를 最大限으로 하기 위하여 國內引受能力을 超過하는 部分에 대하여서만 外國에 出再하도록 國內原受社와 再保社間의 協約(口頭)이 이루어져야 한다.

3) 積荷保險

積荷保險의 경우 輸出貨物은 自由料率이지만 輸入貨物의 경우에는 協定料率로 되어 있다.

現在 輸入貨物의 保險料가 外國에 비하여 높기

40) 이러한 規制는 國內 損害保險會社들이 外國再保市場에 대한 情報가 적기 때문에 詐欺的인 Underwriter나 再保險會社와에 契約를 締結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被害를 防止하려는 것이지 결코 業界의 自律性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限時的으로나 이러한 規制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美國에서 自國保險會社の 利益을 위하여 海上輸入積荷物에 대한 Cross-border方式의 許容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國內損保社は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輸入積荷物에 대한 保險料도 自由化하고 保險料도 外國에 水準에 맞게 調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上記한 保險分野 이외에 航空保險, 機械, 汽罐保險, 原子力保險등과 같은 大型特種保險分野에서도 國內保險社の 保有能力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外國에 대부분을 出再하여야 하므로 外國으로부터 保險料를 求得하여 使用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分野에서도 料率의 自由化가 필요한데, 自由化의 方法은 火災保險이나 船舶保險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段階的으로 하기 위하여 保險金額이 一定한 額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第1段階로 外國에서 求得한 料率을 사용하도록 하고 國內適用料率도 認可料率, 協定料率으로 하되 料率을 外國水準에 맞추어 調整하는 한편, 料率適用의 彈力性を 부여하기 위하여 範圍料率과 個別料率體系를 확립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損害保險市場의 開放化 추세와 保險料 自由化의 影響을 주시하면서 國內料率 適用·使用의 範圍를 段階的으로 引下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Ⅶ. 結 論

保險市場의 特殊性때문에 保險市場에서 完全自由競爭의 原理를 導入·實施하는데에는 制約과 限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競爭인 “有効競爭의 效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政策的인 配慮를 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에서는 지금까지 國家가 業者相互間의 競爭行爲를 지나치게 規制하여 왔으나, 우리損害産業이 保險市場의 開放과 外國의 壓力에 對備하기 위하여서도 業者相互間의 公正하고 適正한 競爭을 誘發시켜서 우리損害産業이 하루속히 競爭能力을 自救的으로 培養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政策이 필요하다.

保險市場에서 保險料의 自由化가 順機能的인 影響을 줄 수 있기 위하여서는 保險加入者들이 保險에 대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市場洞察力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保險會社에 加入하는 것이 價格, 條件, 質(擔保力)面에서 有利한가를 評價判斷하여 有利한 保險會社만을 찾아서 保險契約을 締結하려는 努力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家計性保險需要者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保險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고, 市場洞察이 缺如되어 있으며, 이러한 努力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計性保險分野에서는 料率自由는 順機能的인 影響보다도 逆機能的인 影響만을 주기 때문에 料率自由化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家計性保險分野에서는 料率을 規制하는 대신에 國家가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들을 위하여 保險會社の 利益規制, 契約者配當競爭(長期保險分野), 保險料의 適時引上·引下調整 등의 方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企業保險分野에서는 家計性保險分野와는 달리 保險料率自由化가 順機能的인 影響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分野에서는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料率을 自由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英國, 美國, 佛蘭西를 제외한 先進保險國家에서

도 料率自由化가 企業保險分野에서만 실시하고 있 있지 않음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으며, 家計性保險分野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하고